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설치 및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가.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
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에 이바지하고,

나.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(안 제12조)

※ 2023. 12. 31. ⇨ 2028. 12. 31.

나.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(안 제1조 ~ 안 제5조,
안 제7조 ~ 안 제8조, 안 제10조 ~ 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

- 현행 조례는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)를
설치,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
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해 제정됨

- 2014년 「지방재정법」이 제9조제3항 및 제4항⁹⁾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고, 충북도는 이를 반영하여 2018년 10월 1일에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 규정을 신설함
- 2018년 개정된 조례의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,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등을 정비하였음
- 안 제2조와 안 제11조는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여, 충북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음
- 안 제3조와 안 제13조는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문의 제목을 정비하였음
- 안 제12조는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음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‘재정계획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쳤고, 조례안 예고를 마쳐 연장 절차를 완료함¹⁰⁾

9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~ ② (생략)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- 부칙에서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 - 시행일은 존속기한에 맞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
 -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21조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함
 - * 현행 조례 제3조제2항11)은 ‘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‘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’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 정책심의회에는 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심의사항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임
- 그 밖에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 및 어문규정에 따라 잘못 사용된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를 바로잡고,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자구 등을 정비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조례안은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충분함
- (법적합성)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조례 개정의 절차 준수와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10) 충북도는 2023년 8월 9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개최하여 ‘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 위원회’를 열어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‘원안의결’하고, 같은 달 14일 해당부서인 ‘농정국 농업정책과’에 통보하고, 도의회는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완료함

11) 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② 심의위원회는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21조에 따른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16, 2010. 1. 1, 2011. 4. 1, 2016.07.08>